

大田直轄市議會會議規則中改正規則(案)

議案 番號	152
----------	-----

發議日字 : 1992. 8. 24.
發 謠 者 : 林憲鍾議員外5人

1. 提案理由

現行規定에 議案의 提出期限이 明示되어 있지 않아 議案이 遲延됨으로 充分히 審查할수 있는 時間이 없었고, 議員의 請暇 및 缺席계를 議長에게 提出토록 되었으나 逮捕·拘禁時에는 關係機關에서 通報된 令狀寫本을 請暇書로 代替토록 하기 위하여 改正하려는 것임.

2. 主要骨子

- 가. 議會議員은 當選初에 當選證書를 議會事務處에 提示하고 登錄하는 것은 當選通知書로 代替하는 것임. (業 第2條)
- 나. 議員의 請暇 및 缺席계를 議長에게 提出토록 되었으나, 逮捕拘禁時에는 政府에서 通報된 令狀寫本을 請暇書로 代替토록 改正 (案 第7條)
- 다. 議案의 提出, 發議期間을 集會日 7日前에 提出토록 明示(案 第20條)
- 라. 議會에서 實施하는 選舉方法 明示 (案 第46條 第4項)

대전직할시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

대전직할시의회회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당선증서”를 “당선통지서”로 한다.

제7조중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다만, 체포 또는 구금시에는 정부에서 통지된 영장사본을 청가서
로 본다.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폐회중에 제출된 청가는 의장이 허가한다.

제20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예산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조례안, 기타 안건의 경우에는 예산명세서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 교육감은 의안을 집회일 7일전에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은 의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6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다음의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무기명투표로 한다.

1.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선거
 2.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 .
 3. 인사에 관한 안건

부 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新舊條文對比表

現 行	改 正(案)	備 考
<p>第2條(登錄) 議會議員 (이하 “議員”이라한다)은 任期初에 當選證書를 議會事務處에 提示하고 登錄하여야 한다.</p> <p>第7條(請假 및 缺席) ①議員이 事故로 인하여 議會에 出席하지 못할 때에는 그理由와 期間을 記載한 請假書를 미리 議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但書規定 新設)</p> <p>②議員의 請假는 5日以內의 것은 議長이 許可하고, 5日을 超過하는 것은 議會에서 이를 許可한다. (但書規定 新設)</p>	<p>第2條(登錄) 議會議員 (이하 “議員”이라한다)은 任期初에 當選通知書를 議會事務處에 提示하고 登錄하여야 한다.</p> <p>第7條(請假 및 缺席) ①議員이 事故로 인하여 議會에 出席하지 못할 때에는 그理由와 期間을 記載한 請假書를 미리 議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다만, 逮捕 또는 拘禁時에는 政府에서 通報된 令狀寫本을 請假書로 본다.</p> <p>②議員의 請假는 5日以內의 것은 議長이 許可하고 5日을 超過하는 것은 議會에서 이를 許可한다. 단, 閉會中에 提出된 請假는 議長이 許可한다</p>	

現 行	改 正 (案)	備 考
<p>第20條(議案의 提出·發講) 議會에서 議決할 議案은 市長, 教育監, 委員會 또는 議員이 提出하거나 發講한다. 다만, 議員은 在籍議員 1/5以上의 연서로 發講한다.</p> <p>(新設)</p>	<p>第20條(議案의 提出·發講) ①(現行과 같음)</p> <p>②豫算上의 措置가 수반되는 條例案, 其他 案件의 경우에는豫算明細書를 아울러 提出하여야 한다.</p> <p>③市長, 教育監은 議案을 集會日 7日前에 議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다만, 緊急한 議案은 議長과 協議하여 決定한다.</p>	
<p>第46條 (票決方法) ①票決할 때에는 議長이 議員으로 하여금 起立 또는 舉手하</p>	<p>第46條 (票決方法) ①(現行과 같음)</p>	

現 行	改 正 (案)	備 考
<p>게 하여 可否를 決定 한다.</p> <p>②議長의 提議 또는 同意를 本會議의 議 決이 있을 때에는 記 名 또는 無記名投票로 票決한다.</p> <p>③議長은 案件에 대 한 이의 有無를 물어서 異議가 없다고 認定한 때에는 可決되었음을 宣布할 수 있다. 그러나, 異議가 있을 때에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方法으로 票決하여야 한다.</p> <p>④議會에서 實施하는 各種 選舉는 法令에 特別한 規定이 없는 無記名投票로 한다</p>	<p>②(現行과 같음)</p> <p>③(現行과 같음)</p> <p>④다음의 경우에는 法令에 特別한 規定이 없는 無記名投票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議會에서 實施하는 各種選舉 2. 地方自治團體長의 再議要求 3. 人事에 관한 案件 	

大田直轄市 議會 會議規則中 改正 規則案

審 査 報 告 書

1992. 8.

議 會 運 營 委 員 會

目 次

I. 審査 經 過	2
II. 提案 說明의 要旨	2
III. 專門委員 檢討 報告 要旨	3
IV. 討論 要旨	5
V. 質疑 및 答辯 要旨	5
VI. 審査 結 果	5
VII. 其他 必要한 事項	5

大田直轄市 議會 會議規則中 改正 規則案
審 查 報 告

1992年 8月 25日
議會 運營 委員會

I. 審查經過

- 가. 提案日字 및 提案者 : 1992年 8月 24日 林 憲鍾 議員外 5人

나. 回 附 日 字 : 1992年 8月 25日

다. 上 程 日 字 : 第13回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II. 提案說明 要旨（提案說明者：林憲鍾議員）

1. 提案理由

現行 規定에 議案의 提出期限이 明示되어 있지 않아, 議案이
遲延됨으로 充分히 審查할 수 있는 時間이 없었고, 議員의 請暇
및 缺席계를 議長에게 提出토록 되어 있으나 逮捕·拘禁時에는
關係機關에서 通報된 令狀寫本을 請暇書로 代替토록 하기 위하
여 改正하려는 것임.

2. 主要骨子

- 議會議員은 當選初에 當選證書를 議會事務處에 提示하고 登錄하는 것을 當選通知書로 代替하는 것임. (案 2條)
- 議員의 請暇 및 缺席계를 議長에게 提出토록 되어 있으나 逮捕 · 拘禁時에는 政府에서 通報된 令狀寫本을 請暇書로 代替토록 改正 (案 第 7條)
- 議案의 提出, 發議期間을 集會日 7日前에 提出토록 明示(案 第 20條)
- 議會에서 實施하는 選舉方法 明示 (案 第46條 第4項)

III. 專門委員 檢討 要旨 (專門委員 : 金鎮燮)

本案件은 上位法 改正에 따른 一部 內容을 調整하고 現行 制度上의 不合理한 運營 體制를 合理的으로 補完 改正코자 하는 것임.

主要 內容을 말씀드리면,

첫째, 案 第 2條에 의한 當選初 議員이 提出하는 當選證書를 地方議會議員 選舉法 施行規則 第 68條의 規定에 의하여 當選通知書로 그 名稱을 變更하는 것으로써, 關聯 法規에 따른 妥當한 措置라思料됨.

둘째, 案 第 7條의 請暇 및 缺席에 있어서 第 1項에 但書 條項을 새로이 新設하여 逮捕 또는 拘禁時에는 政府에서 通報된 令狀寫本을 請暇書로 간주토록 하였음.

이는 地方自治法 (第34條의 2) 改正에 따른 것으로써 本 條例에 明示되어야 할 것으로思料됨.

또한 第2項의 請暇 許可에 있어서, 5日以內는 議長이, 5日을 超過하는 것은 議會에서 이를 許可토록 되어 있으나, 閉會中에 提出된 請暇는 議長이 許可토록 하였음. 이는 閉會中에 議員이 海外出國等 長期 出他할 경우 現實的으로 本會議 許可以前에 行爲가 이루어지고 있는 實情으로써 이를 現實에 맞게 調整하기 위한 것임.

셋째, 案 第 20條 議案의 提出 및 發議에 있어서 市長과 教育監은 議案을 議會에 提出할 경우 豫算이 隨伴되는 條例案 및 其他案件에 대하여는 必要한 豫算 明細書를 함께 提出토록하여 議案提出에 보다 慎重을 기하고 非合理的인 問題點이 없도록 새로운 條項을 新設하는 것임.

또한 市長과 教育監의 案件 提出에 있어서 緊急한 案件外에는 7日前에 提出토록 하여 議案 審查에 대한 充分한 時間的 餘裕를 갖도록 하였음.

이는 그 동안 議案 審查 過程에서 나타난 檢討上의 未備點을 補完 改善하려는 事項으로 關聯 根據 法規는 없으나, 自體 任意規定을 둘 수 있는 事項인 바, 議會 運營上 바람직한 措置라 思料됨 .

다만, 緊急한 案件의 範圍를 分明히 하여 協議 過程에서의 執行部와 異見이 없도록 充分한 檢討가 있어야 할것임.

넷째, 案 第 46條의 票決方法에 있어서 事案에 따라 記名 또는 無記名投票로 實施할수 있는 것을 同條 第4項의 規定에 의한 無記名投票인 議會의 各種 選舉以外에 地方自治團體長의 再議要求와 人事에 관한 事項을 追加로 明示하여 重要事案에 대하여는 無記名으로 實施토록 그 範圍를 分明히 하였는 바,

이는 國會法 第112條의 規定에 의한 法律案 및 人事에 관한
無記名 投票 方式과 意味를 같이 하는 内容으로써 必要한
措置라 思料됨.

IV. 討 論 要 旨 : 省 略

V. 質 疑 및 答 辯 要 旨 : 省 略

VI. 審 査 結 果 : 原案 可 決

VII. 其 他 必 要 한 事 項 : 없 음